KOSHA GUIDE

C - 64 - 2018

- (마) "내화벽돌"이란 규조토, 내화점토 등이 주성분인 벽돌로서 강도는 높지 않으나 열에 강하기 때문에 굴뚝, 벽난로 등의 구조물에 사용되는 벽돌을 말한다.
- (바) "보강블록구조"란 콘크리트 블록 개체의 속빈 부분 또는 수직단면 간의 공동부에 철근을 매입하고, 모르타르(Mortar) 또는 콘크리트를 채워 넣어 내력벽으로 시공한 블록구조를 말한다.
- (사) "ALC(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블록"이란 석회질, 규산질 원료와 기포제 및 혼화재료를 주원료로 물과 혼합하고, 고온고압(180 ℃, 1.0 MPa)의 증기양생 과정을 거쳐 경량성, 단열성, 내화성 및 시공성이 우수한 블록을 말한다.
- (아) "우레탄 폼"이란 글리콜 성분과 디이소시아네이트 성분이 물과 반응하여 발생한 탄산가스를 이용하여 형성된 발포체를 말하는 것으로 폴리우레탄폼이라고도 한다. 우레탄 폼은 조적벽체의 단열, 방음, 방습 등을 목적으로 출입문, 창문, 설비배관 주위의 충전재로 사용된다.
- (자) "적정한 공기"란 산소농도의 범위가 18 % 이상 23.5 % 미만, 탄산가스의 농도가 1.5 % 미만, 황화수소의 농도가 10 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를 말한다.
- (차) "파레트(Pallet)"란 벽돌, 블록을 지게차로 운반하기 위하여 화물전용깔판에 벽돌, 블록더미를 쌓고 상부를 PP밴드(Polypropylene band), 비닐 랩 등으로 감싼 것을 말한다.
- (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조적작업 안전사항

4.1 자재반입 및 운반 작업

4.1.1 공통사항

(1) 조적공사에 사용되는 벽돌, 블록, 철근 등의 자재는 KS 규격에 합격한 품질, 성능 및 외관이 양호한 제품이 반입되어야 한다.